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3일,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 2.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인철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
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2014년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연임된 원장은 19명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은 3명에 불과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재선임이 빈번히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비해 재선임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재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임.

출연(연) 업무 수행의 연속성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이 인정되는 원장은 연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거치는 것보다는 재선임이 간소한 절차로 기능할 수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출연(연) 원장이 임명된 현황을 보면 추천에 의한 경우가 전무하여 25건 모두 공개모집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원장 후보자 추천 제도는 폐지하지 아니하고 존속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 또한 원장 재선임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선임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